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2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1.

발 의 자 : 이훈기 · 곽상언 · 김우영
박지혜 · 이성윤 · 민병덕
김남근 · 양부남 · 모경종
강준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.

현행법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개문냉방에 대한 제제도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별도의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,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의 설치·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보다는 권고와 지원

중심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(안 제36조의3제2항
및 제3항 신설).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3의 제목 중 “유지·관리를 위한 조치”를 “유지·관리 등을 위한 조치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을 개선하거나 에너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을 개선하거나 에너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·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의3(건물의 냉난방온도 <u>유</u> <u>지 · 관리를 위한 조치</u>) (생 략)	제36조의3(건물의 냉난방온도 <u>유</u> <u>지 · 관리 등을 위한 조치 등</u>)
<u><신 설></u>	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)
	② 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</u> <u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냉난방설</u> <u>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</u> <u>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의</u> <u>효율을 개선하거나 에너지의</u> <u>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</u> <u>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③ 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</u> <u>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</u> <u>율을 개선하거나 에너지의 손</u> <u>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설</u> <u>비의 설치 · 보급 비용을 지원</u> <u>할 수 있다.</u>